

사내대학 설치계획서(인가신청서)

(앞쪽)

신청인 (대표자)	신청자(공동 설치의 경우 대표자)	주민등록번호
	산업체명	전화번호
	(상시)종업원 수 ※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포함하여 적되, 고졸 종업원 수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.	
	주소	

신청 내용	명칭
	목적
	설치자 (공동 설치의 경우 산업체를 모두 적음)
	위치
	운영규정(학칙) ※ 학칙 내용으로 같음함
	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(전문학사의 경우 2년) ※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로 같음함
	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 ※ 현재 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현황표로 같음함
	개교 예정일

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첨부서류

신청인 (대표자) 제출서류	1. 학칙 1부 2. 향후 4년간 재정운영계획서(전문학사의 경우 2년) 1부 3. 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표 1부 4. 향후 4년간 교육·연구용 시설 및 설비 확보계획서(전문학사의 경우 2년) 1부 5. 실습시설 및 설비확보 계획서 1부 6. 교원확보 계획서 1부 7. 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각 1부 8. 위치도 1부 9.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부 10.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※ 인가신청서 제출 시에는 설치계획서에 따른 교원 등 확보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주민등록표 초본(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등본 3. 토지대장 등본 4. 지적도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,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